

유럽 선진국의 법제적 테러 개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islative Conception of Terror of the Advanced European Nations

권정훈* · 김태환**

<목 차>

I. 서론
II. 테러에 대한 각국의 법제적 현황
III. 각국의 법제적 테러 개념의 비교분석
IV. 한국의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발전적 제언
V. 결론

<요약>

각국에서는 시대적 변천, 지리적 특성, 문화적 가치, 환경적 요소 등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테러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에 선진화된 유럽에서는 법제화된 테러리즘의 규정에 따른 목적과 행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대응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테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한 법률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통령훈령 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행정적 조치 사항만을 규정한 것일 뿐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리스트의 수사 및 처벌의 내용이 수반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목적이자. 우리나라가 명시하고 있는 ‘각종’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없다. 테러리스트들을 수사 및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생되고 있는 ‘정치적·사상적·사회적·종교적’으로 자행되는 행위 등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소를 테러방지법안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 경동정보대학 경호합기도과 교수(제1저자)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공동저자)

볼 것이다.

셋째,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과학화, 정보화 시대환경의 흐름에 부합되는 전자 및 정보시스템 파괴, 핵물질 관련 범죄, 테러리스트들의 무기구입, 판매 금지를 위한 자금세정, 방화 등을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 가운데 하나가 환경테러이기 때문에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원료, 음용수, 공기 등에 독물 또는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주제어 : 법제적, 테러범죄 규정, 테러목적, 테러행위, 테러유형 죄

I. 서 론

사회적 현상의 다변화로 인해 홍수, 태풍, 지진 등의 자연발생적 재해와 테러나 전쟁 등의 인위적 재난이 발생되고 있다.* 그 중에서 21세기에 들어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인위적 재난인 ‘테러’로부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국에서는 다각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권정훈, 이승철, 김태환, 2006 : 371) 세계 도처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간헐적으로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테러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00년 이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테러는 오늘날 국제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테러리즘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 한 연구 기관에 의하면 테러리즘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지금까지 100개 이상의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가 학자들과 각 국가 및 국제기구 등에 의해 제시되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Alex p. Schmid and Albert J. Jongman, 1998 : 1-59 ; 박준석, 2006 : 13 ; 최진태, 2006 : 17). 이는 테러리즘의 주제, 이념, 동기, 대상, 범위 등의 포함 여부 및 행위의 시각, 나아가 시대적 변천과 주변 환경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자들과 테러리즘 전문가 및 국가기관에 따라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와 같이 테러의 정의는 다양하게 해석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학문적 영역의 학자들과 각 국가기관 및 국제기구 즉, 모두가 동의하는 보편적 관념인 테러리즘의 정의를 도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테러리즘의 정의가 간과된 상태에서 테러리즘의 역사, 이론적 접근, 발생원인, 유형 등 나아가 테러의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행정적, 기술적 측면 등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없음을 물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적 재해, 인위적 재해, 기타 재해로 구분한다.

** 테러리즘의 발생 현황(1968~2005년)

연도	사건	부상자	사망자
1968-1969	206	268	37
1970-1979	2,220	3,635	1,610
1980-1989	3,448	9,384	3,952
1990-1999	4,681	25,810	5,747
2000-2005	14,046	45,814	22,379
총계	24,601	84,911	33,725

출처 : 최진태 2006 : 41 재구성

*** 미국의 경우 중앙정보부(CIA), 연방수사국(FBI), 국무부, 법무부 심지어 동일 부처인 국방부는 1983년과 1986년에 각기 다른 테러리즘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거니와 대테러리즘 정책수립을 위한 첫 단계 역시 정의에서부터 출발해야 함으로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도출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국경 없는 경제 발전, 산업화 그리고 국제화의 가속으로 재외국민****, 해외여행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위협의 증가라는 문제들이 수반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테러’이다.

최근에 우리 국민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2월 27일 아프간 바그람의 자살 폭탄테러*, 2007년 5월 15일 마부노 1·2호의 피랍**, 2007년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 세력의 피랍사태*** 등이 연이어 발생되었다. 또한, 유럽에서는 2004년 3월 11일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폭탄테러 사건****, 2005년 영국 런던 지하철 연쇄폭탄테러사건***** 등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더 이상은 우리나라도 안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 2008년 현재 지역별 재외국민 현황을 살펴보면 구주지역 655,934명, 북미지역 2,242,369명, 아주지역 370,172명, 아프리카지역 8,399명, 일본지역 629,236명, 중국지역 2,761,954명, 중남미지역 107,484명, 중동지역 9,340명으로 총 6,784,888명이 집계되었다(외교통상부 재외동포 현황 www.mofat.go.kr).

*****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 현재 주요국 한국인 출국자 수는 11,170,572명으로 조사되었다(한국관광공사 시장조사팀 2007. 12.14 www.knto.or.kr).

* 2007년 2월 27일에는 아프간 바그람에 소재하고 있는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자살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아프간 현지인의 기능공 집체교육 대상자 인솔 및 출입조치를 위해 현장에 있던 한국군의 다산부대 통역병 하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우리선원이 승선한 마부노 1·2호가 피랍된 소말리아 해역에서 최근 해적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우리 어선의 조업활동 및 항행자제가 요구되고 있다. 소말리아는 지난 1991. 1 「바레」대통령이 축출된 후 내전으로 해상의 치안부재가 계속되자 해적이 출몰하기 시작하였는데 지난해 6월 과도정부를 축출한 이슬람반군이 소말리아를 일시 장악하여 단속을 강화하자 해적사건이 감소되기도 하였으나 금년초 이슬람 반군이 과도정부-에티오피아군에 패퇴하면서 금년 들어 10건이 발생하는 등 해적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 2007년 7월 19일 분당 샘물교회 자원봉사자 23명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 세력에 피랍되어 한국인 남자인질 2명을 살해, 여자인질 2명이 석방되었고 한국정부는 탈레반 대표와의 지속적인 대면협상을 통해 결국 41일 만에 남은 인질 19명 전원이 석방되었다.

**** 2004년 3월 발생한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폭탄테러는 사망자 191명, 부상자 1,841명에 달해 유럽 최악의 테러 가운데 하나로 기록된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북아프리카 출신의 무슬림들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항의하기 위해 테러를 저질렀다. 폭탄테러의 주범인 모로코인 2명과 스페인 1명에게 각각 징역 4만년형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18명에 대해서는 무기밀매와 테러단체 가입 혐의만을 인정해 각각 징역 3~18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2007.11.8 재구성).

***** 2005년 7월 7일 영국 수도 런던 시내 중심가의 아침 혼잡시간에 런던 중심부의 4곳에서 지하철과 버스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연쇄폭발이 발생하여 56명이 숨지고 700여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중 50명은 중상을 입었다. 알 카에다로 자칭하는 비밀조직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으며 이 사건은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영국의 심장부에서 발생했고 복잡한 출근 시간대에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자살테러라는 점 등에서 9·11테러 사건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는 점에 관심을 끌었다. 수사 결과 테러를 저지른 4명의 범인은 파키스탄 계 영국인들로 밝혀졌는데 10~30대의 전과가 없는 평범한 영국 시민들로 같은 영국인이 테러를 저질렀다는 사실 때문에 영국 국민은 더 큰 충격에 휩싸였다(최진태, 2006 : 401).

이제는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테러에 대한 대처방안의 입법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테러범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차원의 입법정책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법제화된 법령상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있어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테러와 테러리즘의 관계*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김창윤, 2006 : 166) 본고에서는 테러와 테러리즘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II. 테러에 대한 각국의 법제적 현황

1. 프랑스

프랑스는 1980년대 들어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테러와 외국 기원의 테러가 보다 활발해졌다.** 테러리즘의 전쟁 및 국가 치안의 침해에 관한 법률이 1986년 9월 9일에 제정되고*** 1992년의 新형법전 제정에 의한 법전에서 테러행위의 정의와 함께 환경테러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아울러 테러리즘 처벌의 강화 등에 대한 1996년 7월 22일 법률에 의한 개정**** 및 일상생활의 안전에 관한 2001년 10월 31일 법률에 의한 개정***** 등을 거쳐 테러리즘과 관련된 법률이 현재에 이르렀다.

프랑스는 형법전 제 421-1조에서 ‘테러행위(des actes de terrorisme)’란 위협 또는 공포에 의한 공공의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목적을 갖고 개인 또는 집단의 계획으로 고의와 관련하여

첫째, 고의로 한 생명침해, 신체의 안전성에 대한 침해, 약탈, 감금 및 항공기 선박 그 외 기획으로 운송수단을 탈취

둘째, 절도, 강요, 파괴, 훼손, 훼손, 훼손 및 정보처리에 관한 범죄

* 테러는 마음의 상태(a state of mind)를 의미하는 반면에, 테러리즘은 조직화된 사회적 활동(organised social activity)으로 테러 보다 조직화된 형태(the more organised form of terror)로 이해하고 있다. 가장 좁은 의미의 견해에 의하면 테러는 테러리즘이 없으면 발생할 수 없으며, 테러는 테러리즘의 요체라는 것이다(John Richard Thackrah, 2004 : 264-265 ; 김창윤, 2006 : 166).

** 熊谷卓 <프랑스공화국에 있어서 테러리즘에 대한 국내법적 규제(1)> 히로시마 법학 22권 3호(1999년) 40항

*** 新井 129항

**** 岡村美保子 <해외법률정보·프랑스~테러대책의 신 법안>주리스트 1090호(1996년 6월)91항

***** 門彬 <비행대책법부터 테러대책법에 : <일상 안전에 관한 법률>성립> 외국의 입법211호(2002년 2월)91항

셋째, 전투 집단 및 해산된 운동에 관한 범죄 및 범인은닉, 통화위조에 규정된 범죄
넷째, 무기, 폭발물 또는 핵물질에 관련한 범죄
다섯째, 범죄로부터 발생한 것을 은닉
여섯째, 자금세정범죄
일곱째, 금융재정법전에 규정하는 법정조합(정규조합)의 거래에 게재한 범죄는 테러행위로 한하고 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도 ‘테러행위(des actes de terrorisme)’로 간주하고 있다.

첫째, 위협 또는 공포에 의한 공공의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목적을 갖고 개인 또는 집단의 기획으로 고의로 관련하여 사람 또는 동물의 건강 또는 자연 환경을 위협에 처하게 하는 성질을 띤 물질을 대기 중 지상, 지하, 식료품 또는 식료품의 구성요소 또는 영해를 포함한 수계에 방출하는 행위
둘째, 객관적 사실의 성격에 부합된 테러행위의 준비를 목표로 형성된 집단 또는 공모에 참가하는 행위
셋째, 전부 또는 일부가 테러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의도한 또는 사용되기 위해 준비된 것을 알면서 어떤 자금, 증권 또는 재산을 제공하고 수령 또는 관리하고 또는 자금공여 목적으로 조언을 주고 테러의 기획에 대해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런 테러의 발생과 상관없이 테러행위로 한다.

2. 독일*

독일에 있어서는 구 서독일시대의 1970년대, 서독일 적군파 등이 정, 관, 재계의 주요요인을 인질로 삼아 옥중 동지의 석방을 정부, 관계기관에 강요하는 등의 악질적인 중대한 테러가 속출했었다.** 1975년 2월 서 베를린의 보수계 야당 지부장의 유괴, 감금사건, 같은 해 4월의 재스웨덴 서독일대사관의 공격사건 발생을 감안해 같은 해 8월 통칭 ‘테러방지법’이라 칭하는 형법, 형사 소송법, 재판소 구성법, 연합 변호사법 및 형사법을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하고 같은 법에 의거한 형법의 개정 에 의해 테러리스트단체의 결성에 관한 형법 제 129조 a가 신설되었다. 제 129조의 범죄적 단체의 결성에 비해 가중 처벌되게 되었다.***

동조는 1985년부터 86년에 걸쳐 발생한 테러사건들을 계기로 1986년 12월에

* 독일의 테러대책 법제의 개요에 관해서 渡辺齊志<IV.테러대책, 3.독일> <주요국의 긴급사태 대처>98
항. 미국의 동시다발테러사건 이후 독일 테러대책입법으로써 渡辺齊志<테러대책을 위한 입법동향>
외국 입법 212호(2002년 5월)105항, 初宿正典<독일 결사법 개정과 종교단체의 지위>쥬리스토1243호(
2003년 4월) 50항 및 小島裕史<독일 치안관계법령(1)~(6)>경찰학논집 56권 4호(2003년 4월) 113항~
同 卷11호(같은 해 11월) 125항

** 則定衛<서독일의 최근 테러사법 대책입법에 대해서>법률의 광장31권 2호(1978년 2월)30항

*** 山本和昭(서독일의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법률의 광장 30권 2호(1977년 2월)66항

제정된 테러범죄방지법* 등이 개정되었다. 또한, 동조는 어디까지나 일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를 테러리스트 단체로서 그 편성과 참가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데 그치지 않고***** 프랑스와 달리 테러행위를 정의한 것은 아니지만 테러범죄의 범주에 드는 범죄유형을 제시하는 간접적인 형태로 테러범죄를 정의하고 있다.

제 129조 a의 구성 및 내용을 살펴보면*

1. 모살죄, 고살**죄, 민족 모살죄, 인질죄, 전쟁범죄, 공갈적 인신 탈취죄를 목적으로 또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는 단체를 편성하고 또는 이에 대해 참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2. 타인에 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손해를 주거나(1호) 방화, 실화, 일수, 궤도, 선박, 항공교통에 대한 위협행위, 공공의 경영에 대한 방해, 항공교통 및 해상교통에 대한 공격 등의 죄(2호), 독물 살포에 의한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죄의 경우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죄(3호), ABC병기와 대인지뢰 제조의 죄(4호), 화기의 불법 소유, 제조 등의 죄(5호)의 각 호에 기재한 죄를 목적으로 하고 또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는 단체를 편성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제 2항에서 기술한 단체에 참가한 자도 (1호)~(5호)의 범죄의 하나가 민중을 중대한 방법으로 위협하거나 관청과 국제기관에 대해서 폭력을 동반해 협박에 의해 강제를 가하거나 국가 또는 국제기관의 정치적, 헌법적, 경제적, 사회적인 기본구조를 불안정화 시키거나 또는 파괴하는 것의 행위에 맞는 경우 또는 그 행위에 의한 국가와 국제기관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게 된다.
3. 제 1항 및 제 2항에 기재한 죄에 의해 협박을 목적으로 하고 또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는 단체를 편성한 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4. 주모자 또는 막후의 인물인 범인의 경우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3년 이상의 자유형, 제 3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5. 테러리스트 단체를 지원하고 또는 선전하는 자는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경우에 의거해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 제 3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제 1항 또는 제 2항에 기재된 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원자를 얻기 위해 선전을 행한 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

* 福島徳良夫<테러범죄방지법> 외국 입법 27권 5호(1988년)233항

***** 일련의 테러방지관련 조약을 일본(형법 제 4조의2)과 같은 양상으로 포괄적 국외범치벌 규정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河村博<모든 외국에 있어 국가요인 등 보호조약 등 관련입법의 동향>주리스트871호(1986년 11월)59항

* 渡辺<테러리스트범죄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EU법의 국내법화-> 155항 이하에 따른다.

**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한 순간의 걱정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을 뜻한다.

한다.

3. 영국***

영국에 있어서는 북아일랜드 문제부터 파생한 아일랜드 공화국군의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 1973년 북아일랜드긴급권법**** 및 1974년 테러방지임시조치법*****이 제정되었고 이것에 기초해 대책이 구성되어 왔지만,* 북아일랜드 평화의 진전**과 새로운 테러의 위협 등을 입각해*** 이들을 폐지하고 ‘테러’를 정의하는 등으로 테러일반에 대처하기 위한 영구적인 성격의 법으로 대체하며**** 2000년 7월 20일 새로운 테러법*****을 제정하여 200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동법에 있어서 테러리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테러리즘은 사람에 대한 폭력, 재산에 대한 손해, 행위자 이외의 생명을 위협에 처하게 하거나, 공중 또는 그 일부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협에 처하게 하거나, 전자시스템의 중대한 방해 또는 파괴를 의도로 한 행위에 규정한 행위에

*** 영국의 테러대책법제의 개요에 대해서 岡久慶<IV.테러대책, 2.영국><주요국의 긴급사태 대처>82항 및 渡井理佳子<영국의 테러대책법제> <시민사회의 자유와 안전> 73항

**** Northern Ireland (Emergency Provisions) Act 1973(the"EPA") 또한 同法에대해서 田島泰彦 <긴급사태입법과 군, 경찰권한-북아일랜드긴급조치법의 검토>법의 과학11호(1983년)120항

***** Prevention of Terrorism (Temporary Provision) Act 1974(the "PTA")또한 同法에 대해서 田島泰彦<테러방지입법과 시민적 자유>법률시보 52권 4호 (1980년 4월) 157항

* 양방 제정 후의 경위에 대해서 岡久<IV.테러대책, 2.영국><주요국에 있어 긴급사태의 대처>86항 및 渡井<영국에 있어 테러대책법제> <시민사회의 자유와 안전> 73항

** 신교도측과 구교도간의 대립 속에 1996년 6월 영국 및 아일랜드 정부 그리고 북아일랜드 6개 정파간에 처음으로 평화협상이 시작된 지 22개월 만인 1999년 4월 10일 IRA의 정치조직인 신페인(Sinn Fein)당을 포함한 (97. 9 협상참여) 평화협상 당사자간에 역사적인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평화협상 과정에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버티 어헌 아일랜드 총리는 회담이 교착될 때마다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클린턴 美대통령은 조지 미첼 전 상원의원을 중재역으로 임명하여 적극적인 중재외교를 전개하였다(김성환,1998 : 7).

*** Legislation Against Terrorism -A consultation Paper (1998)(이하 <1998년 협의서>)에 있어서<중전의 정의는 경미한 폭력 사용이 대상행위로 되어 있다는 점과 한편으로는 종교적 동기에 의한 테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없어서 미국 FBI의 정의에 입각해 검토했다.>란 취지의 기재이다.

**** 1998년 협의서. 또한 和田 53항

***** Terrorism Act 2000

* 번역은 松下整<주요국에 있어 경찰관의 권한(上)>경찰학논집 55권 5호(2002년 5월) 179항에 따른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해당개정에 의한 정의에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기관>("or an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sation)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 岡久慶<영국2006년 테러리즘법-<사악한 사상>과의 전쟁>외국 입법 228호(2006년 5월)108항. 또한, 영국은 국제연합에 의한 경제제판을 실시하는 법적 틀로써 1946년 국제연합법이란 법률을 가지고 있으며 UN안보이결의 제1373호의 채택 후, 同결의를 실시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2001년 테러리즘(UN조치) Statutory Instruments 2001 No.3365에 있어서 <테러리즘>이 정의된 바 (佐藤 외 78항), 해당정의도 2000년 테러법의 정의와 같다.

해당하는 것, 해당행위의 실행 또는 협박이 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또는 공중 또는 그 일부를 협박하는 것을 의도로 한 것, 해당행위의 실행 또는 협박이 정치적, 종교적 또는 사상적 주장을 전개하는 목적을 갖는 행위의 실행 또는 협박을 가리킨다.

둘째, 사람에 대한 폭력, 재산에 대한 손해, 행위자 이외의 생명을 위협에 처하게 하거나, 공중 또는 그 일부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협에 처하게 하거나, 전자시스템의 중대한 방해 또는 파괴를 의도로 한 규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화기 또는 폭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행위의 실행 또는 협박이 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공중 또는 그 일부를 협박하는 것을 의도로 한 것의 규정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라도 테러리즘에 포함한다. 또한, 해당행위의 실행 또는 협박이 정치적, 종교적 또는 사상적인 주장을 전개하는 목적을 갖는 것이란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III. 각국의 법제적 테러 개념의 비교분석

한국은 테러리즘 위협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제를 위한 단일 법안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현행법상 테러범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정의되어 있지 않고 다만, 형법의 일부 규정이나 특별법 중 일부 조항이 테러리즘 규제를 위해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대테러리즘 활동기반은 대통령훈령 제 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유일하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2호에서 국제테러범죄에 관하여 살펴보면 ‘테러’라 함은 테러분자 등이 각종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이익 또는 국민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불법적으로 자행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 첫째, 국가요인 및 그 가족의 납치·암살
- 둘째, 항공기 및 선박의 납치·폭파
- 셋째, 해외체류 외교관·유학생·상사원·취업근로자 및 해외여행자 등의 억류 및 납치·암살
- 넷째,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 및 재외공관 등에 대한 공격

** 또한, 격조결정은 <정치상, 헌법상, 경제상, 또는 사회상의 기본구조에 대한 중대한 불안정화 또는 파괴를 초래한다>이것을 목적으로 한 행위도 테러리즘 범죄에 해당하는 바, 영국의 <테러리즘>의 주관요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1982년 1월 21일 대통령훈령 제47호로 제정되어 1997년과 1999년 그리고 2005년에 각각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 국가중요시설이란 공항(항공기 포함),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제1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

- 다섯째, 국내 정계·재계 등 각계 주요인물의 납치·암살
- 여섯째, 주한외교사절 및 체류한 외국저명인사의 납치·암살
- 일곱째, 폭발물·총기류·유해화학물질 등을 이용한 무차별 인명살상
- 여덟째, 기타 우리나라와 관련된 국제적 범법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테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테러의 예방·방지 및 범인색출 등 전 과정을 규정한 테러방지법의 제정안(부칙포함 총 5장 29조)을 국가정보원에서 입법예고하였으나 2004년 5월 16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다.

국가정보원에서 입법예고했던 테러방지법 제정안의 내용 중 테러의 정의를 살펴보면 “테러”라 함은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족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다음의 불법행위로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로

- 첫째, 국가요인 및 그 가족, 직계 주요인사, 외국요인, 주한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상해·약취·체포·감금·살인
- 둘째, 국가중요시설, 대한민국의 재외공관, 주한 외국정부 시설의 점거·방화·폭파 및 다중이용시설의 방화·폭파
- 셋째, 항공기·선박·열차·차량 등 교통수단의 납치·폭파
- 넷째, 폭발물·총기류 기타 무기를 사용한 위협 또는 무차별한 인명살상
- 다섯째, 대량으로 인명을 살상하기 위한 유해성 생화학물질 또는 방사능 물질의 누출 또는 살포라고 되어 있으며 “테러단체”라 함은 설립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그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테러를 행하는 국내·외의 경사 또는 집단을 말하고 있다.

요시설을 말한다(경비업법시행령 제2조). 국가보안목표란 군사전략상 적에게 노출되거나 파괴되었을 때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를 요하여 지정된 시설이다. 통합방위지침상의 국가중요시설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며 국가정보원에서 지정, 하달하고 있고 그 중요성이나 시설의 등급여부에 따라 지정내용이 상이하므로 매년 중요시설 지정내용이 동일하지 않다. 중요시설의 방호책임은 당해 시설의 장 또는 시설주에게 있으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의 자체방호책임은 각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에게 있다(김용욱, 2004 : 25). 국가중요시설의 분류는 형식적 분류와 실질적 분류로 구분하는데 형식적 분류는 다시 행정시설과 산업시설로 나뉜다. 행정시설에는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중앙부처기관, 한국은행, 지방관청 등이 있으며 산업시설에는 일반산업시설, 발전시설, 변전시설, 방송, 통신시설 등이 있다. 실질적 분류는 가급, 나급, 다급, 기타급으로 나뉘는데 가급은 국방·국가기간산업 등 국가의 안전보장에 고도의 영향을 미치는 행정·산업시설이고 나급은 국가보안상 국가 경제·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산업시설이며 다급은 가보안상 국가 경제·사회생활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 및 산업시설이다. 기타급은 중앙부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행정 및 산업시설로서 중요도는 희박하다(이윤근, 1998 : 256).

그리고 “테러자금”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으로

첫째, 테러단체가 보유한 모든 종류의 자산과 그 자산에 관한 권리

둘째, 테러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과 테러를 통하여 얻거나 얻기로 한 수익을 말하고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테러의 예방·방지, 테러의 진압, 테러사건 현장에서의 인명구조·구급조치 등 주민보호, 테러범죄의 수사 등을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상기에서 살펴보았듯이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는 테러와 관련한 법적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우리나라와 상이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1. 테러범죄 규정근거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는 테러의 개념과 관련하여 형법 등의 법률에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형법전 제421-1조에 테러행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져 있고 독일은 프랑스와는 달리 테러행위를 정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테러범죄방지법을 제정하여 형법 제129조의 a에 일정 유형의 범죄를 테러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1974년 테러방지임시조치법 제 14조 1항에서 처음으로 규정된 이후, 1989년 테러방지임시조치법 제20조 1항에 규정하여 왔지만 테러일반에 대처하기 위해 2000년 테러법을 공포하면서 각각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테러리즘 활동기반은 대통령훈령 제 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만이 유일할 뿐이다.

2. 테러의 요소(목적)

각국의 입법례에 나타난 테러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테러의 주관적 요소로서 일정한 목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일반테러와 환경테러로 구분하고 있지만 두 경우 모두 '위협 또는 공포에 의하여 공공의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정치적, 종교적 또는 사상적인 주장을 전개하는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에는 주관적 요소에 요구되는 목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모살죄, 고살죄, 민족 모살죄, 전쟁범죄, 공갈적 인신 탈취죄, 타인에 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손해를 주거나 방화, 실화, 일수(하천), 궤도, 선박, 항공교통에 대한 위협행위, 공공의 경영의 방해, 항공교통 및 해상교통에 대한 공격 등의 죄, 독물 해방에 의한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죄의 경우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죄, ABC병기*****와 대인지뢰 제조의 죄,

***** 군사용어로 화생방 무기를 일컫는다.

화기의 불법 소유, 제조 등의 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동기 등으로 대중에게 공포심을 야기하는 목적에서 집단적으로 행하는 일정한 중대한 범죄 또는 공공위험범죄가 테러로 처벌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나 영국의 경우에는 정치적 목적에만 국한하지는 않고 있다. 반면, 한국은 '테러분자 등이 각종의 목적'으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테러의 행위

테러행위에 있어서 프랑스에서는 '생명침해, 신체의 안전성, 약탈, 감금 및 항공기 선박 등 운송수단 탈취, 절도, 강요, 파괴, 훼손, 훼손 및 정보처리, 무기, 폭발물, 핵물질 등과 관련한 범죄 및 은닉행위, 자금세정, 법정조합의 거래'로 규정하고 환경테러행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개인 또는 집단이 위협 또는 공포에 의해서 공공질서를 현저히 해할 목적으로 사람 또는 동물의 건강 및 자연환경에 위협한 성질의 물질을 대기중, 지상, 지하 또는 수계에 방출하는 행위도 동일한 테러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직접적인 정의규정은 아니지만 형법 제 129조 a에서 테러단체에 편성될 수 있는 기준에 모살, 고살, 공갈적 인신 탈취죄, 타인에 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범죄행위, 방화, 실화, 일수, 궤도, 선박, 항공교통에 대한 위협행위, 경영 방해, 대인지뢰 제조, 화기 불법소유, 제조 등 일정한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사람의 폭력, 재산의 손해, 타인의 생명, 건강 또는 안전의 위협, 전자시스템의 방해 또는 파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이익 또는 국민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불법적으로 자행하는 행위로 국가요인 및 가족, 해외체류자, 주요인물, 외교사절 및 저명인사의 납치·암살, 항공기 및 선박,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공격, 폭발물, 총기류,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한 인명살상의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4. 테러유형의 죄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는 테러범죄로 처벌되는 범죄 유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테러단체조직죄

프랑스에서는 테러대책법에 의해 프랑스 및 외국에 대한 테러행위를 선동, 교사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국외퇴거 또는 입국금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제 129조 a에서 테러행위를 할 목적으로 또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는 단체를 편성하고 또는 이에 대에 참가한 자, 주

모자 또는 배후세력의 인물인 범인, 테러리스트 단체를 지원하고 또는 선전하는 자까지 처벌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테러방지임시조치법에서는 테러관련단체를 규정하여 참가, 지원, 지지를 금지, 테러범죄의 실행, 교사, 예비, 선동과 관련된 자, 테러단체의 참여 금지, 자금지원과 모금행위의 규제를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반국가단체구성의 가입죄(국가보안법 제3조, 제4조)와 범죄단체의 구성과 활동, 이용과 지원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로 처벌할 수 있다.

2) 폭발물, 방사선 등의 테러 죄

프랑스에서는 테러를 목적으로 폭발, 화재 기타 사람의 생명에 위협한 방법에 의한 재물손괴죄를 규정하고 그로 인한 치사상의 경우와 미수, 협박 등도 가중처벌된다. 또한, 테러를 목적으로 무기 또는 폭약을 불법취득, 소지, 수입한 경우 등도 가중처벌하게 된다. 영국에서도 폭발물법*에 의거 실제 어떠한 폭발이 일어났던지간에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소유물에 심각한 손해를 가할 여지가 있는 폭발을 일으키는 폭발물의 사용을 공모하거나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법령에 의해 유죄를 인정받은 사람은 평생 종신형에 처해진다. 또한, 독일에서도 방화, 실화 등으로 공공 및 일정한 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 대인지뢰 제조, 화기 불법소유, 제조 등으로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119조의 폭발물에 관한 죄, 제 141조의 공용물의 파괴, 제 165조의 공용건조물 등의 방화, 제172조 폭발물파열죄의 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또한,

* 폭발물법(Explosive Substances Act) : 폭발물법령은 1883년 영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실제 어떠한 폭발이 일어났던지 간에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소유물에 심각한 손해를 가할 여지가 있는 폭발을 일으키는 폭발물의 사용을 공모하거나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 의해 유죄를 인정받은 사람은 평생 종신형에 처해진다. 의심적은 상황에서 폭발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되며 어떠한 이유로 어디에서 폭발물을 습득하게 되었는지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할 경우 명백한 범죄로 규정된다. 이 법령에 따르면 금전, 물질, 부동산, 혹은 그 밖의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도와줄 경우 실제 폭발물을 사용한 사람과 대등한 형태로 기소되거나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공식적인 수사나 재판 과정 중에 소환되는 증인은 도주할 경우 체포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에, 어떤 증인의 자백은 다른 범죄자나 민사 소송절차에 사용될 수 없다.

폭발물 법령은 1939년 S-Plan, 1975년 Birmingham, 1985년 Tony Lecomber, 그리고 2006년 Talbot Street bomb-making haul등의 사건에서 테러리스트들을 기소하는데 있어서 근간이 되어 왔다. 폭발물 법령이 최근에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이라크 출신의 의사 Bilal Abdullah는 2007년 런던과 글라스고우의 차량 폭탄 공격 사건으로 기소된 첫 인물이 되었다. 지프차가 불탄 후에 체포된 Abdullah는 글라스고우 공항의 출입구로 돌진하고 있었다. 체포 전에는 Scotland의 Paisley에 위치한 Royal Alexandra 병원의 의사로 근무하고 있던 27세의 이 청년은 폭발물 법령 1883에 의해 폭발을 일으키는 데 공모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영국내의 인명에 위협을 가하고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폭발을 공모한 죄목으로 기소되었다(<http://en.wikipedia.org>).

폭발, 방화 등의 테러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 73조의 총포·도검 및 화약류단속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3) 환경테러 죄

환경테러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프랑스 형법전 제 421-1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위협 또는 공포에 의한 공공의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목적을 갖고 개인 또는 집단의 기획으로 고의와 관련하여 사람 또는 동물의 건강 또는 자연환경을 위협에 처하게 하는 성질을 띤 물질을 대기 중 지상, 지하, 식료품 또는 식료품의 구성요소 또는 영해를 포함한 수계에 방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환경테러의 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형법 제 129조 a의 구성 및 내용에서 독극물 살포에 의한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죄의 경우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죄가 적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환경테러의 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없으나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제 192조의 음용수 유해물혼입죄, 제 193조의 수도음용수 유해물혼입죄, 제 194의 음용수 혼독치사상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상기에서 살펴본 각국의 법제적 테러에 대한 비교분석을 <표 1>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 각국의 법제적 테러개념 비교분석

각국 요소	프랑스	독 일	영 국	한 국
테러범죄 규 정근거	형법전 제421-1조	테러범죄방지법 제정, 형법 제129조 a	테러법	대통령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
테러 일반적 요소(목적)	(주관적 요소)위협 또는 공포에 의하여 공공의 질 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목 적	(주관적 요소)정치적 동기 등으로 대중에게 공포심 을 야기하는 목적	(주관적 요소)정치적, 종 교적 또는 사상적인 주장 을 전개하는 목적	(주관적 요소)테러분자 등 이 각종의 목적
테러 행위	생명침해, 신체 안전성, 약탈, 감금 및 항공기 선 박 등 운송수단 탈취, 절 도, 강요, 파괴, 훼손, 훼손 및 정보처리 범죄, 무기, 폭발물, 핵물질 등과 관련 한 범죄 및 은닉행위, 자 금세정, 범정조합의 거래	모살, 고살, 공갈적 인신 탈취죄, 타인에 대한 신체 적 또는 정신적 범죄행위, 방화, 실화, 일수, 궤도, 선 박, 항공교통에 대한 위험 행위, 경영 방해, 대인지 되 제조, 화기 불법소유, 제조	사람의 폭력, 재산의 손해, 타인의 생명, 건강 또는 안전의 위협, 전자시스템 의 방해 또는 파괴	국가이익 또는 국민에 대 하여 국내·외에서 불법 적으로 자행하는 행위
테러유형 죄	· 테러단체조직죄 · 폭발물, 방사선 등의 테 러 죄 · 환경테러 죄	· 테러단체조직죄 · 폭발물, 방사선 등의 테 러 죄 · 환경테러 죄	· 테러단체조직죄 · 폭발물, 방사선 등의 테 러 죄	· 테러단체조직죄 · 폭발물, 방사선 등의 테러 죄 · 환경테러 죄(직접적인 처 벌규정은 없음)

IV. 한국의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발전적 제언

각국의 법제적 테러개념의 비교분석을 통해 테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적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발생 직후 색출작업을 통해 테러리스트에 대해 직접적으로 수사 및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테러에 대한 대비를 위해 테러가 발생하기 이전의 예방적인 측면에서 국제협력 체제의 강화, 대테러 정보 역량의 강화, 테러리스트들의 국내 출입 규제, 국내 무기 반입 규제 등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테러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에 있어서는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다. 테러는 그 행위에 있어서 일반범죄보다 중한 범죄임이 마땅하기에 확연한 구분으로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테러리즘의 활동 기반은 대통령훈령 제47호가 유일하나 이는 국가 대테러 활동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행정적 조치 사항만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응하는 데는 한계성이 있고 테러리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최진태, 2006 : 354-355).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역시 더 이상은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피해사례가 지속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다시 마련하여 발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테러리스트들을 수사 및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즉,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유책성)이 있어야 한다. 구성요건해당성이란 구체적인 개개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합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불문하고 우리나라는 ‘각종’이라는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위협 또는 공포로 공공의 질서를 방해하는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정치적 동기로 대중에게 공포심을 야기하는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정치적, 종교적 또는 사상적인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명시하고 있는 ‘각종’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충족될 수 없다. 물론, 목적을 위한 모든 수단이 테러의 방법이고 그 대상이 목표가 될 수 있다고 규정지를

** 객관적 구성요건이란 행위의 외부적 현상을 기술한 것으로,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고의, 목적 등)와 독립하여 외부적으로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면, 행위의 주체, 행위의 객체, 행위의 결과, 행위의 수단, 인과관계, 행위상황 등을 말한다.

*** 주관적 구성요건이란 행위자의 내심적·주관적 상황에 속하는 구성요건을 말하며 이에 고의, 과실, 목적범의 목적 등이 해당된다.

수는 있지만 구성요건에 충족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테러리스트들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정치적·사상적·사회적·종교적’으로 자행되는 행위 등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소를 테러방지법안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셋째, 테러리스트들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테러행위를 자행하는데 행위란 인간의 의사에 의한 신체의 활동이다. 테러행위를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특이한 점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정보처리 범죄, 핵물질 범죄, 자금세정 등이 있고 독일은 방화, 실화, 일수, 경영 방해 등이 있으며 영국에서는 전자시스템의 방해 또는 파괴라고 테러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테러의 유형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 즉,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해 군사관련 체계, 발전소, 항공기운항 시스템, 철도 및 교통통제 시스템, 금융, 에너지 등의 국가기반시설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변조나 파괴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시스템과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한 취약성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며 정보 인프라가 잘 구축된 선진국일수록 그 취약점은 배가된다(서상열, 2006 : 66).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 정보화 수준에 있어 세계에서 선두자리를 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전자, 정보시스템의 파괴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은 방해받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 또한, 국제적 비난과 보복에 대한 우려로 아직까지는 사용된 적이 없는 핵무기 또는 핵물질을 이용한 테러리즘과 생화학무기에 의한 대량살상을 유발할 수 있는 테러리즘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다(서상열, 2006 : 66). 따라서 과학화, 정보화 시대환경의 흐름에 부합하여 전자 및 정보시스템 파괴, 핵물질 관련 범죄, 테러리스트들의 무기 구입, 판매 금지를 위한 자금세정, 방화 등을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 가운데 하나가 그 위협의 심각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환경테러를 덧붙일 수 있다. 예를 들면, 1995년 일본에서 발생한 도쿄 지하철 독가스 테러사건과 같이 사회적 공포·불안심리를 이용하여 공중의 안전을 해하는 물질을 대기중 또는 수계에 방출함으로써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라고 할 수 있겠다. 프랑스에서는 일반테러와 환경테러를 각각 구분하여 논의하였듯이 환경테러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있고 독일형법에서도 환경테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이에 준하는 수질과 공기·소음 또는 유해물의 폐기 등에 관한 죄가 적용되고 있다. 우리 법에서도 환경테러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없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음용수 혼입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 47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한

인명살상으로 테러 행위를 규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독성이 매우 강한 것과 강하지 않지만 장기간 섭취함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주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독성이 강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을 테러행위의 공격무기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매년 200여종이 시장에 신규로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독성이 강한 것과 강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여 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원료, 음용수, 공기 등에 독물 또는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V. 결 론

각국에서는 시대적 변천, 지리적 특성, 문화적 가치, 환경적 요소 등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테러의 규정, 테러의 목적, 테러의 행위, 테러유형의 죄 등 테러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토대를 마련하여 발효되고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테러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 역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기에 선진화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테러에 대한 법제적 대응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테러의 규정에 따른 목적과 행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죄를 제시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테러에 대한 대처방안의 입법정책 마련에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법제적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한 법률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통령훈령 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행정적 조치 사항만을 규정할 것일 뿐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리스트의 수사 및 처벌의 내용이 수반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가 명시하고 있는 ‘각종’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없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생되고 있는 ‘정치적·사상적·사회적·종교적’으로 자행되는 행위 등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소를 테러방지법안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 ‘유해화학물질’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로서 급성 독성, 어독성, 번이원성, 발암성 등 일정한 지정기준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유독물, 관찰물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해화학물질은 전세계적으로 약 1,200만 종이 존재하며 매년 2천여 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있고 한국에는 현재 35,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200여종이 시장에 신규로 출시되고 있다(두산백과사전).

셋째,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과학화, 정보화 시대환경의 흐름에 부합된 전자 및 정보시스템 파괴, 핵물질 관련 범죄, 테러리스트들의 무기구입, 판매 금지를 위한 자금세정, 방화 등을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 가운데 하나가 환경테러이기 때문에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원료, 음용수, 공기 등에 독물 또는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앞서 유럽 선진국의 법제화된 테러의 개념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테러의 법제적 논의를 내리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 권정훈·이승철·김태환(2006). "대구지하철화재를 중심으로 본 테러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안전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 논문집』." 「경비업법 시행령」 제2조.
- 김성한(1998). "탈냉전기 미국의 국제분쟁 중재외교 : 북아일랜드 평화협상을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 김용욱(2004). "공항보안의 발전에 관한 연구 : 보안요원의 직무수행 향상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
- 김창윤(2006). "적극적 테러리즘을 위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구축방안", 『한국민간 경비학회보』.
- 「국가보안법」 제3조.
_____ 제4조.
- 대통령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두산백과사전.
- 박준석(2006). 『뉴테러리즘개론』. 백산출판사.
- 서상열(2006). "국가요인 테러리즘에 대응체제 구축방안", 『경호경비연구』.
- 이윤근(1998). 『경찰경비론』. 경찰대학.
- 연합뉴스, 2007. 11. 8.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 「총포도검 및 화약류단속법」 제73조.
- 최진대(2006).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 대영문화사.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_____ 제5조.
- 「형법」 제114조.
_____ 제119조.
_____ 제141조.
_____ 제165조.
_____ 제172조.
_____ 제192조.
_____ 제193조.
_____ 제194조.

- Alex p. Schmid and Albert J. Jongman.(1998). Political Terrorism : A New Guide to Actors, Authers, concepts, Data Bases. Theories and Literature. Amsterdam : SWIDOC.
http : //en.wikipedia.org
- Terrorism Act 2000.
www.mofat.go.kr
www.knto.or.kr
- 岡久(2003). “주요국의 긴급사태 대처”, 「IV.테러대책, 2.영국」 86항.
- 岡久慶(2003). “주요국의 긴급사태 대처”, 「IV.테러대책, 2.영국」82항.
- _____(2006). “영국 2006년 테러리즘법<사악한 사상>과의 전쟁”, 외국입법 228호 108항.
- 岡村美保子(1996). “해외법률정보·프랑스~테러대책의 신 법안”, 『유리스토』1090호 91항.
- 熊谷卓(1999). “프랑스공화국에 있어서 테러리즘에 대한 국내법적 규제(1)”, 히로시마 법학 22권 3호 40항.
- 渡辺. “테러리스트 범죄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 -EU법의 국내법화-”, 155항.
- 渡辺齊志(2002). “테러대책을 위한 입법동향”, 외국입법 212호 105항.
- _____(2003). “주요국의 긴급사태 대처”, 「IV.테러대책, 3.독일」98항.
- 渡井. “영국의 테러대책법제”, 『시민사회의 자유와 안전』 73항.
- 渡井理佳子. “영국의 테러대책법제”, 『시민사회의 자유와 안전』73항.
- 門彬(2002). “비행대책법부터 테러대책법에 : <일상 안전에 관한 법률> 성립”, 외국 211호 91항.
- _____(2003). “주요국의 긴급사태 대처”, 「IV.테러대책 4.프랑스」 108항.
- 小島裕史(2003). 「독일 치안관계법령(1)~(6)」. 『警察學論集』 56권 4호 113항. 立花書房發行.
- _____(2003). 『警察學論集』 56권 11호 125항. 立花書房發行.
- 松下整(2002). “주요국에 있어 경찰관의 권한(上)”, 『警察學論集』 55권 5호179항 立花書房發行. 新井 129항.
- 新井誠. “시민사회의 자유와 안전”, 「프랑스에 있어서 테러대책법제」, 124항.
- 田島泰彦(1980). “테러방지입법과 시민적 자유”, 『법률시보』 52권 4호 157항.
- _____(1983). “긴급사태입법과 군, 경찰 권한-북아일랜드긴급조치법의 검토”, 『법의 과학』 11호 120항.
- 初宿正典(2003). “독일 결사법 개정과 종교단체의 지위”, 『유리스토』 1243호 50항.
- 則定衛(1978). “서독일에 있어 최근의 테러사범 대책입법에 대해서”, 『법률의 광장』, 31권 2호 30항.
- 河村博(1986). “모든 외국에 있어 국가요인 등 보호조약 관련입법의 동향”, 『유리스토』 871호 59항.
- 和田 53항.

ABSTRACT

A Study on the Legislative Conception of Terrorism of the Advanced European Nations

Kwon, Jeong-Hun · Kim, Tae-Hwan

Many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have enacted laws on terrorism in the light of the changes that time has brought to them, geographical features, cultural values, and environmental elements.

Especially some advanced European nations prescribe the definition of terrorism, the purpose of terrorism, the behavior of terrorism, and the types of crimes related to terrorism and so on for the following reason that it is more vital for the authorities concerned to investigate and punish terrorists after the rise of terrorism.

In this regard, this paper analyzes legislative countermoves against terrorists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France, Germany, and England and through this sheds light on the need of future anti-terrorism bills.

The legislative basic guidelines directly to manipulate future terrors based on theories derived from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first place, providing laws on direct investigative power and harsher punishment to those involved in terrorism is a prerequisite for social security and thus the presidential directive of the state anti-terrorism action guidelines just deals with administrative measures without any effective response to terrorism. Hence it is urgent to make anti-terrorism bill concerning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of terrorists.

In the second place, it is associated with the objectives of terror. The expression "all sorts of" stated in Korean law is so quite unclear that it can not fulfill the required conditions for naming it "crime". Comprehending provisoes of the crime that meets the purpose of the terrorists is necessary in order to investigate and inflict punishment on them. Therefore, it is advisable to establish specific and precise principles such as political, social, ideological, and religious purpose of terrorists in the bill.

In the third place, to meet the flow of times of technicalization, informatization, such provisoes as destruction of electronic data system, crimes related to nuclear

materials, purchases of weapons by terrorists, tax administration for prohibition of sale, and arson should be considered in terror bill.

In the fourth place, nonselective attack toward unspecified individuals has become a serious issue in our society. Terrorists leave poisonous foods or beverages to crowded place or dump toxic chemicals into river intentionally. Therefore more strict regulations must be included in terror bill to prevent possible terrorist attacks.

Key Words : Legislative, Terror provision, Terror object, Terror act, Guilty of Terror type